

선박 지도점검

해양오염지도점검 규칙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시설 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
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
3.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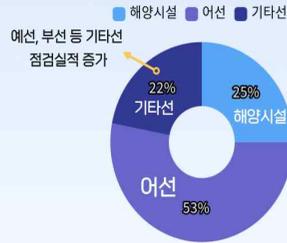
⋮

정기점검 기준

- 중점관리 대상 선박·시설(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선박·시설)
- 일반관리 대상 선박·시설(중점관리 대상 선박 및 시설 외)

관리기준	정기점검 기준
중점관리 대상 선박	연 1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	연 2회
일반관리 대상 선박	연 1회
일반관리 대상 시설	연 1회

2022년 지도점검 실적



주요 점검항목

※ 속초시 관할 선적지를 둔 선박 대부분이 50톤 미만 유조선 및 100톤 미만 일반선박에 해당

'50톤미만 유조선 및 100톤 미만 일반선박'의 경우

- ① 선박제원(선박번호, 톤수, 선주/선장, 선적항 등)
- ② 오염물질 처리
 - 연료유 사용량(유종, 탱크 개수 및 용량, 적재량 등)
 - 슬러지, 폐유, 선저폐수 등 처분량(발생량, 처리량, 처리업체명 등)
- ③ 화물유 적재량(유조선만 해당)
- ④ 폐유저장용기 비치 여부 및 용량
- ⑤ 오염물질 기록부(기름기록부,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비치 여부
- ⑥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및 지도점검 결과(위반사항, 지도사항)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L)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20
2)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60
3)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100
4)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200

※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 나눠 비치 가능, 용기 대신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설치 가능, 폐유저장용기 표면에선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해야함



이 외의 선박

- ① ~ ③ 동일
- ④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련 정보(상태, 종류, 용량)
 - 여과장치, 소각설비, 분뇨오염방지설비,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방오도로방오시스템 적용여부
- ⑤ 해양오염방지증서(유류, 기간)
 - 방오시스템감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 ⑥ 오염물질 기록부(기름기록부, 폐기물기록부,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비치 여부
- ⑦ 해양오염방지관리인(임명 및 임명장 비치여부, 교육이수여부, 대리자임명여부)
- ⑧ 유출대비대응(방제선 등 배치 또는 대행자 지정여부, SOPEP 비치여부 등)
- ⑨ 연료유 공급서 및 연료유 샘플 비치 보관 여부
- ⑩ 오염보험가입사항(보험회사명, 보험금액)
- ⑪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및 지도점검 결과(위반사항, 지도사항)

해양오염신고 및 사고 분석

속초지역 해양오염사고·신고 발생주의예보 캘린더							2월(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발별 사고·신고 현황 : 사고 5건 / 신고 11건 ※ : 사고·신고 3건 이상 발생주의							1 (1. 11)	2 (1. 12)	3 (1. 13)	4 (1. 14)		
5 (1. 15)	6 (1. 16)	7 (1. 17)	8 (1. 18)	9 (1. 19)	10 (1. 20)	11 (1. 21)						
* 사고 : 1건 * 신고 : 1건		* 사고 : 1건 * 신고 : 1건										
12 (1. 22)	13 (1. 23)	14 (1. 24)	15 (1. 25)	16 (1. 26)	17 (1. 27)	18 (1. 28)						
		* 신고 : 1건	* 사고 : 2건 * 신고 : 2건			* 사고 : 1건 * 신고 : 1건						
19 (1. 29)	20 (2. 1)	21 (2. 2)	22 (2. 3)	23 (2. 4)	24 (2. 5)	25 (2. 6)						
		* 신고 : 1건	* 사고 : 1건 * 신고 : 1건									
26 (2. 7)	27 (2. 8)	28 (2. 9)										
* 신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자주 발생하는 해양오염예방 Q & A

Q. 등록되지 않은 소각설비의 가동 시 위법 여부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증서)에 미등록된 소각설비를 이용하여 폐유·기름걸레 등 110kg 을 소각처리한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 1호의 비고 내에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에 안에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이 안된 소각설비를 이용하여 폐유, 기름걸레 등을 소각한 경우 소각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적합하지 않은 소각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은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유창청소업자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이 안된 소각기로 소각하여 처리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파출소에 포스터 배부 예정이니 해양오염예방에 다 같이 힘써주세요~~

